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3.7.11.공포, 2024.1.12.시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사항 중 공표의 실익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
(안 제3조제3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식하는 인용 규정 정비

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 조정(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조정

다.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예외요건 마련
(안 제47조제1항)

법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축소(안 제72조제1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은 삭제함

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조정(안 별표4)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영 제32조제1호나목) : ('23) 3,911,280원 → ('24) 4,240,710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3) 행정규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75”를 “50”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2조제1호 중 “면허번호·성별”을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4제1호가목 중 “6억 6,199만원”을 “7억 1,776만원”으로, “18,768.16”을 “20,348.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 하한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 32조제2호가목 및 별표4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 1.·2. (현행과 같음) 3. ----- ----- <u>및 법 제3조의2 제2항에</u> ----- ----- ----- ----- ----- -----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7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 ----- 50

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생략)	----- ----- ----- 나. (현행과 같음)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신설>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2. (생략)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① 법 제81 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② ----- -----그 밖에 대통령 령----- ----- -----.	② ----- -----그 밖에 대통령 령----- ----- -----.
1. 2. (현행과 같음) 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72조(공표 사항) ----- ----- ----- -----.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u>면허번호</u> <u>· 성별</u> 2. · 3. (생 략)	1. ----- ----- <u>면허번호</u> 2. ·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